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740호
2021.12.17.(금)



목 차

◆ 고 시

제2021-702호	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 및 녹지)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	2
제2021-705호	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고시	9
제2021-707호	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에 따른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	10
제2021-710호	-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-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강화 조치 고시	17
제2021-711호	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노래(코인)연습장, PC방, 영화관, 멀티방· DVD방, 직업훈련기관, 오락실, 대형유통시설, 콜센터 등 방역강화 조치 고시	23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02호

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 및 녹지)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'14.3.27)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7호('18.6.7)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기반시설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72호('18.11.22)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제2020-23호('20.1.9) 및 제2021-249호('21.6.3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-2915호('21.11.25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 및 녹지)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위해 열람 공고한 다시·세운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도로 및 녹지)사업 실시계획 변경(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결정 사항 포함)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12월 17일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 및 녹지)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

1) 도시계획시설(도로)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2	3	30	집산 도로	1,800 (464)	시정앞광장	을지로6가	일반도로	-	총독부고시 722호 (36.12.26)	을지로, 대림상가 ~ 삼풍상가 (을지로상부)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(폭6.0m~10.6m)
기정	중로	1	29	20	집산 도로	1,450 (459)	저동1가	광희동광장	일반도로	-	총독부고시 722호 (36.3.26)	마른내길, 호텔PJ~ 신성상가 (마른내길상부)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(폭3.5~44.2m)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2	126	4~19	집산 도로	850	종로3가 45-4	충무로4가 125	일반도로	-	서울시 고시 제2014-119호 (14.3.27)	삼풍상가 ~ 진양상가 서측 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(폭3.0~15.0m)
기정	중로	2	127	19	집산 도로	780	종로3가 32-8	충무로4가 116-2	일반도로	-	서울시 고시 제2014-119호 (14.3.27)	삼풍상가 ~ 진양상가 동측 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(폭4.0~15.0m)

※ 을지로 지하도로와 대입상가 지하층 연결통로 및 삼풍상가 동측 경관녹지 연결통로 개설

2) 도시계획시설(녹지)

○ 도시계획시설(녹지) 변경 결정조서 (경미한 사항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 적 (㎡)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	
기정	4	녹지	경관녹지 (지하도로)	인현동2가 57-3	2,231.9	2,231.9 (466.8)	서울시 고시 제2014-119호 (14.3.27)	중복결정
			경관녹지 (보행자전용도로)		2,231.9	2,231.9 (208.9)		중복결정
변경	4	녹지	경관녹지 (지하도로)	인현동2가 57-3	2,231.9 (466.8)	2,231.9 (445.9)		중복결정 (면적정정)
			경관녹지 (보행자전용도로)		2,231.9 (208.9)	2,231.9 (208.9)		중복결정

○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4	녹지	- 을지로지하도로~삼풍상가 동측 경관녹지와 연결을 위한 지하도로 (지하연결통로) 중복결정 면적 정정(감 20.9㎡) - 면적 : 445.9㎡ - 폭 : 7.81m~42.46m - 길이 : 8.85m~12.14m	삼풍상가 동측 지하연결통로 상세설계에 따른 위치 및 중복결정 면적 정정 필요

나.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 및 녹지) 실시계획(변경)

- 1)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 없음)
 -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8-34 일원
- 2)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 없음)
 - 종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 및 녹지)
 - 명칭 : 다시·세운프로젝트

3)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

① 도시계획시설(1층 도로), 보행자전용도로(3층 보행데크)

② 도시계획시설(녹지) - 지하도로(연결통로) 중복결정

4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 없음)

- 성명 : 서울특별시장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

5)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(변경)

-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~ 2021년 12월 31일까지

6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관리자의 성명·주소

① 도시계획시설(녹지)-지하도로(연결통로) (변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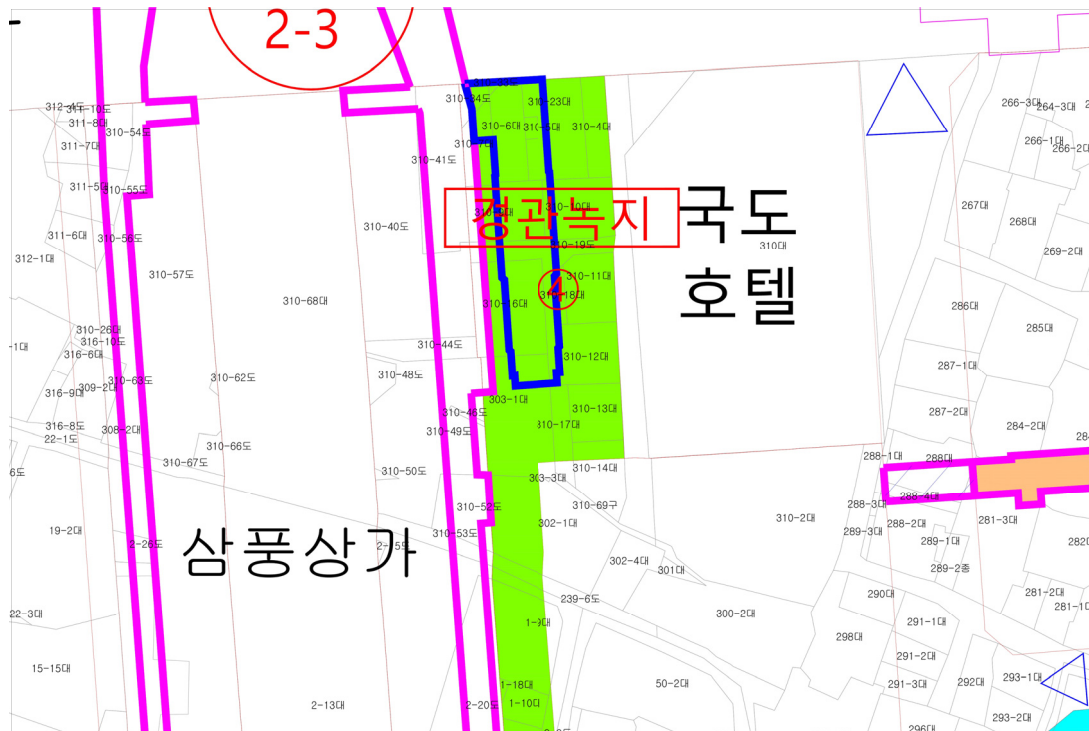
○ 토지조서(사용)

- 세운6-3-3구역 재개발정비사업('21.7.7. 착공) 관련 기부채납 예정 경관녹지로 보상 대상 아님(※ '20.7.3. 사업시행자 토지사용 승낙)

연번	위 치		지번	지목	공부상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사용 면적(㎡)			소유자		비고
	구	행정동					기정	증감	변경	성명	주소	
합 계					1,970.9	1,294.4	466.8	감) 20.9	445.9	-	-	-
1	중구	을지로4가	310-34	도	14.5	14.5	-	증) 8.8	8.8	우리자산신탁주 식회사	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, 20층(삼성동)	중복결정
2	중구	을지로4가	310-33	도	1.7	1.7	-	증) 1.7	1.7			중복결정
3	중구	을지로4가	310-7	대	44.6	44.6	-	증) 22.8	22.8			중복결정
4	중구	을지로4가	310-6	대	57.8	57.8	7.5	증) 50.3	57.8			중복결정
5	중구	을지로4가	310-23	대	5.6	5.6	5.6	-	5.6			중복결정
6	중구	을지로4가	310-5	대	106.8	106.8	106.8	감) 50.8	56.0			중복결정
7	중구	을지로4가	310-4	대	46.3	46.3	22.9	감) 22.9	-			-
8	중구	을지로4가	310-9	대	81.7	81.7	20.0	증) 42.9	62.9			중복결정
9	중구	을지로4가	310-10	대	79.3	79.3	64.3	감) 43.1	21.2			중복결정
10	중구	을지로4가	310-19	도	262.6	77.9	50.7	증) 3.0	53.7	건설부	-	중복결정
11	중구	을지로4가	310-16	대	125.6	125.6	21.0	증) 67.3	88.3	우리자산신탁주 식회사	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, 20층(삼성동)	중복결정
12	중구	을지로4가	310-18	대	10.6	10.6	10.6	증) 0.4	11.0			중복결정
13	중구	을지로4가	310-11	대	65.5	65.5	53.7	감) 51.1	2.6			중복결정
14	중구	을지로4가	303-1	대	153.7	141.0	6.6	증) 30.2	36.8			중복결정
15	중구	을지로4가	310-17	대	29.4	23.4	-	증) 2.8	2.8			중복결정

연번	위 치		지번	지목	공부상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사용 면적(㎡)			소유자		비고
	구	행정동					기정	증감	변경	성명	주소	
16	중구	을지로4가	310-12	대	66.1	66.1	62.4	감) 48.5	13.9			중복결정
17	중구	을지로4가	310-13	대	52.9	52.9	32.8	감) 32.8	-			-
18	중구	을지로4가	310-14	대	59.5	14.7	1.9	감) 1.9	-	우리자산신탁주 식회사	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,, 20층(삼성동)	-
19	중구	을지로4가	302-1	대	185.8	81.0	-	-	-			-
20	중구	을지로4가	239-6	도	37.2	11.7	-	-	-			-
21	중구	인현동1가	8-3	도	92.6	30.3	-	-	-			-
22	중구	인현동1가	1-9	대	102.5	88.2	-	-	-			-
23	중구	인현동1가	1-18	대	1.7	1.7	-	-	-			-
24	중구	인현동1가	1-10	대	29.1	29.1	-	-	-			-
25	중구	인현동1가	1-19	대	30.7	30.7	-	-	-			-
26	중구	인현동2가	39-1	도	227.1	5.7	-	-	-			-

※ 측량 값 반영에 따른 편입 면적 변경사항 반영



7)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: 붙임 첨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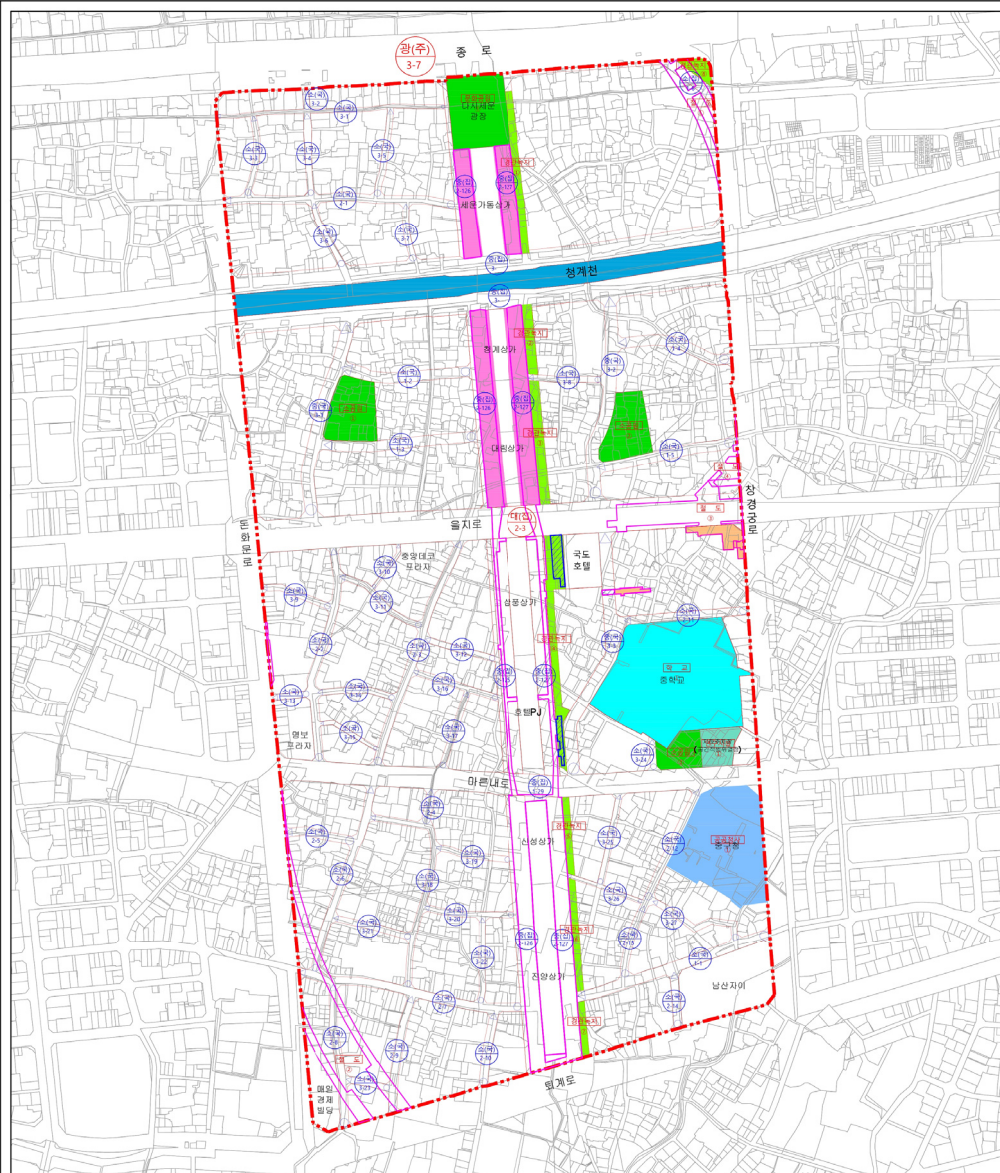
8) 건축허가,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(해당없음)

다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도면 및 서류 등은 서울특별시 도심권사업과(신청사11층)에 비치하고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시세운관리팀(☎ 02-2133-8511)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

도시계획시설 결정도

■ 도시계획시설(기정) 결정도



범례

- | | | |
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
| 재정비촉진지구계 | 학 교 | 종복 결정 |
| 도시계획도로(대) | 공공청사 | 입체적 결정 |
| 도시계획도로(중) | 하 천 | 공간적 범위 결정 |
| 도시계획도로(소) | 연구시설 | |
| 보행자전용도로 | 공 원 | |
| 철 도 | 경관녹지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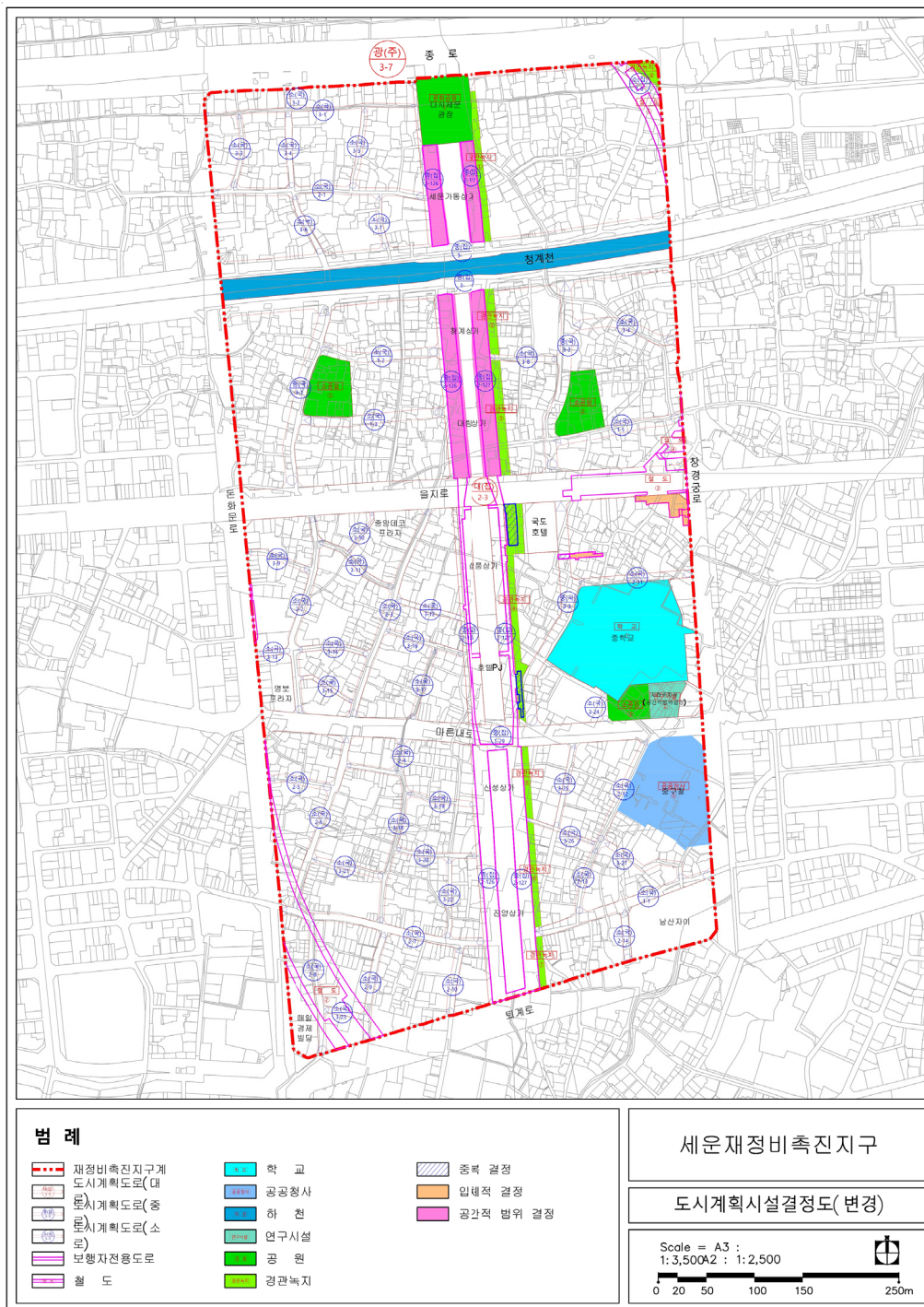
세운재정비촉진지구

도시계획시설결정도(기정)

Scale = A3 :
1:3,500A2 : 1:2,500

0 20 50 100 150 250m

■ 도시계획시설(변경) 결정도

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05호

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고시

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,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의 집회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2월 17일

서울특별시장

□ 집회금지개요

가. 금지대상 :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50인 이상의 집회

－ 50명 이상인 경우 집중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집회 가능

※ 2021.11. 1.자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01호 ‘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고시’ 는 2021.12.18.(토) 00시부로 해제함.

※ 집회는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.

나. 금지기간 : 2021년 12월 18일 00시부터 2022년 1월 2일 24시 까지

다. 위반 시 처벌 :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
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)

라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마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제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바. 담당부서: 서울특별시 행정국 총무과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07호

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에 따른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

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-41176, '21.12.16.)와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제2호,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2월 17일
서울특별시 장

1. 적용기간: ' 21. 12. 18.(토) 0시 ~ ' 22. 1. 2.(일) 24시
2. 대 상: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, 이미용업, 숙박업
3. 내 용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
- (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) 21시~익일 05시 운영 중단
4. 위반 시 조치사항
 - 집합제한조치(운영시간 제한) 위반시 고발 조치(감염병예방법 제80조)
 -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 - ▶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(10만원)
 -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, 폐쇄명령 등(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-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- 경과규정
 -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.1.3.(월) 05시까지 적용
 - 목욕장업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 적용은 2021.12.19.까지 계도기간 부여,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
5. 업종별 방역수칙

① 목욕장업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)

★ 추가 적용 수칙

◦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- 21시~익일 05시 운영중단

◦ (이용자)
- 운영시간 제한 준수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 무 적 용	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	
	◦ 기본방역 수칙 게시·안내 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	◦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	
	◦ 모든 출입자로부터*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*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 - (미완료자, 예외자)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) PCR음성확인자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2) 예외자***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◦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	◦ 접종완료 및 음성/예외 등 확인 협조
	* 관리자·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*** 18세 이하인 자(2022.2.1.부터는 0~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	
	③ 출입자 명부 관리	
	◦ 모든 출입자*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** - 출입명부(수기)는 4주 보관 후 폐기	◦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*
	*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포함, 공무상 출입인 경우,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단, 개인 휴대전화 없는 경우,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(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) ※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(이용) 제외 가능,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※ 계도기간(2021.12.6.~12.19.)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	
	④ 마스크 착용	
	◦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◦ 세심사는 탕 안,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	◦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※ 탕 안,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(탕 안,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* 물·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	
	⑤ 음식섭취	
	◦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	◦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
	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	
	⑥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
	◦ 방역관리자 지정 ◦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권고)	-
권고 사항	◦ (환기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◦ (소독) 일 1회 이상 소독(공용물품, 손잡이, 난간 등) ◦ (시설 내 대화) 종사자-이용자간 등 시설 내 대화 자제 ◦ (공용물품) 1회용컵 비치 및 개인컵 사용 ◦ (손씻기)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◦ (시설 내 거리두기) 시설 내 2m(최소 1m) ◦ (공용시설)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	◦ 권고사항 준수

② 이·미용업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, 필요시 도입 가능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무 적용	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	
	◦ 기본방역 수칙 게시·안내 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	◦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명부 관리	
	◦ 모든 출입자*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이용** 확인 및 안내 -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	◦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**
*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포함, 공무원 출입인 경우,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,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*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	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③ 마스크 착용	
	◦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◦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	* 음식물 섭취 시 예외	
	④ 밀집도 완화	
	※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를 도입(접종완료자 등만 입장)하는 시설의 경우, 인원 제한 없음	
	◦ 신고허가 면적 4㎡당 1명 준수 및 안내	◦ 신고허가 면적 4㎡당 1명 준수
	⑤ 음식섭취 금지	
	◦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	◦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
	⑥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
	◦ 방역관리자 지정 ◦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권고)	-
권고 사항	◦ (대화자제) 부득이 이용 중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경우, 대화 자제 ◦ (환기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◦ (소독) 일 1회 이상 소독(공용물품, 손잡이, 난간 등) ◦ (시설 내 거리두기) 시설 내 2m(최소 1m) ◦ (공용시설)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	◦ 권고사항 준수
기타	※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	
	◦ 모든 출입자로부터*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*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원치자 - (미완료자, 예외자)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) PCR음성확인자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2) 예외자***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◦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	◦ 접종완료 및 음성/예외 등 확인 협조
	* 관리자·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원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*** 18세 이하인 자(2022.2.1.부터는 0~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	

③ 숙박업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무사항	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	
	◦ 기본방역 수칙 게시·안내 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	◦ 방역수칙 준수
	③ 마스크 착용	
	◦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◦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	③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
	◦ 방역관리자 지정 ◦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권고)	-
권고사항	◦ (식사제공)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◦ (환기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◦ (소독) 객실퇴실 후 소독 및 공용물품·공간 일 1회 이상 소독(공용 물품, 손잡이, 난간 등) ◦ (시설 내 거리두기) 시설 내 2m(최소 1m) ◦ (행사·파티)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* 주회 자제 *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◦ (공용시설)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	◦ 권고사항 준수

<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>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▲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▲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▲ 대화 금지 안내	▲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
	★ 추가 적용 수칙 : 실내시설 내 설치된 흡연실(의무)	
	▲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되도록 조치 및 안내 ※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, 1인씩 이용안내	▲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준수 ※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, 1인씩 이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화장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▶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▶ 사용 전/후 손씻기
탈의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▶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▶ 손소독제 배치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탈의실 내 대화 금지 ▶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샤워실	▶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▶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▶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▶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	▶ 샤워실 내 대화 금지 ▶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▶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▶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
휴게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▶ 대화 자제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▶ 대화 자제
탕비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민원창구	▶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

6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, 같은조 제2의2호, 제2의4 및 제80조제7호, 제83조 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: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

8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9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10. 담당부서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10호
**-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-
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강화 조치 고시**

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유흥시설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,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)에 대하여 강화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2월 17일
서울특별시

1. 적용기간 : 2021년 12월 18일(토) 0시 ~ 2022년 1월 2일(일) 24시
※ (경과규정)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' 22.1.3.(월) 05시까지 적용
2. 적용대상
 -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
※ 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·무신고 업소 포함(일반음식점 등도 적용)
 - 서울시 소재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
3. 적용내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¹⁾ 조치
4. 위반 시 조치사항
 -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(벌금 300만원 이하)
 -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·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
 -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
 -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(구상권) 청구
5. 법적근거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
 -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(제1항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 - (제1항제2호의2)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

1) 붙임1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

-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- (제3항)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 - (제2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(제4항제1호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3조
 -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
 - (제1항)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

※ 마스크 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「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 명령」에 따름
 ※ 집합·모임·행사 등의 경우 서울특별시 「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」 공고에 따름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년 12월 18일(토) 0시부터
7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제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9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
-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1부. 끝.

붙임	시설별 방역수칙
----	----------

□ 유흥시설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무적용	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	
	◦ 기본방역 수칙 게시·안내 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	◦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 시 접종증명 확인 등	
	◦ 모든 출입자로부터*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 *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출입(이용) 가능/18세 이하 이용 금지 ◦ 접종완료자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	◦ 접종완료 확인 등 협조
	* 관리자·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,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	
	③ 출입자 명부 관리	
	◦ 모든 출입자*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**	◦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
	*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포함, 공무상 출입인 경우,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수기명부 운영 금지	
	④ 마스크 착용	
	◦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◦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	* 음식물 섭취 시 예외	
	⑤ 운영시간 제한	
	◦ 21시 ~익일 05시 운영 중단	◦ 운영시간 제한 준수
	⑥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
	◦ 방역관리자 지정 ◦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권고)	-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① 추가적용 수칙(콜라텍·무도장 한정)	
	◦ 시설 내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및 안내	◦ 시설 내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준수
권고사항	◦ (환기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◦ (소독) 일 1회 이상 소독(공용물품, 손잡이, 난간 등) ◦ (손씻기)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◦ (시설 내 거리두기) 시설 내 2m(최소 1m) ◦ (공용시설)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	◦ 권고사항 준수

□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무적용	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	
	◦ 기본방역 수칙 게시·안내 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	◦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	
	◦ 모든 출입자로부터*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*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 - (미완료자, 예외자)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) PCR음성확인자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2) 예외자***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◦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	◦ 접종완료 및 음성/예외 등 확인 협조
	* 관리자·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*** 18세 이하인 자(2022.2.1.부터는 0~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※ 위 1), 2)와 같은 '접종완료자 등' 이 아닌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(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불가)	
	③ 출입자 명부 관리	
	◦ 모든 출입자*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** - 출입명부(수기)는 4주 보관 후 폐기	◦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** ※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
	*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포함, 공무상 출입인 경우,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단, 개인 휴대전화에 없는 경우,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(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) ※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(이용) 제외 가능,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※ 계도기간(2021.12.6.~12.19.)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④ 마스크 착용	
	◦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◦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	* 음식물 섭취 시 예외	
	⑤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
	◦ 방역관리자 지정 ◦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권고)	-
	⑥ 추가적용 수칙	
권고 사항	◦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(편의점* 포함) ↳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·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	◦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로만 이용(편의점* 포함) ↳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·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
	*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, 자유업 포함	
	◦ 시설 내 모든 공간 흡 연기 금지 및 안내 ◦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◦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	◦ 시설 내 모든 공간 흡 연기 금지 ◦ 테이블 간 이동 금지
	◦ (환기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◦ (소독) 일 1회 이상 소독(공용물품, 손잡이, 난간 등) ◦ (시설 내 거리두기) 시설 내 2m(최소 1m) ◦ (공용접촉 사용 등) 공용접촉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◦ (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) 주사위, 카드, 게임기,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,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◦ (공용시설)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	◦ 권고사항 준수

<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>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▶ 사람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▶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▶ 대화 금지 안내	▶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▶ 흡연실 내 대화 금지
화장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▶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▶ 사용 전/후 손씻기
탈의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▶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▶ 손소독제 배치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탈의실 내 대화 금지 ▶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샤워실	▶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▶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▶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▶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	▶ 샤워실 내 대화 금지 ▶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▶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▶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
휴게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▶ 대화 자제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▶ 대화 자제
탕비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민원창구	▶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11호

**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노래(코인)연습장, PC방, 영화관, 멀티방·DVD방,
직업훈련기관, 오락실, 대형유통시설, 콜센터 등 방역강화 조치 고시**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제2호, 제2의2호 및 제2의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노래(코인)연습장, PC방, 영화관, 멀티방·DVD방, 직업훈련기관, 오락실, 대형유통시설,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2월 17일

서울특별시

1. 적용기간 : 2021년 12월 18일(토) 0시 ~ 2022년 1월 2일(일) 24시

※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678호('21.12.6.)는 본 고시로 대체함

2. 경과규정 등

-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: 2022년 1월 3일(월) 05시까지 적용

- 방역패스 적용 예외연령 축소* : 2022년 2월 1일(화) 0시 ~ 별도안내 시까지

*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3. 적용대상

I.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시설(의무)

○ 서울시 소재 노래(코인)연습장*, PC방, 영화관, 멀티방·DVD방, 직업훈련기관

* ① 노래(코인)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 중인 시설(음반·음악영상물제작업소, 예:유비방 등)은 방역수칙 동일 적용
② 노래(코인)연습장 형태의 영업을 하는 무허가·무신고 업소 포함

II.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

○ 서울시 소재 오락실, 대형마트·백화점·복합쇼핑몰·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대형유통시설**

**① 3,000㎡ 이상 대규모 점포 중 '한국표준산업분류' 상 종합소매업
② '유통산업발전법'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
(예 : 대형마트, 특정 품목(의류·가전·가전용품·서적 등)에 특화된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공구·아파트 상가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)
③ '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' 제2조제12호에 따른 3,000㎡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(예:농협 하나로마트)

III. 고위험사업장

○ 서울시 소재 콜센터 및 보험회사 전화영업점(대리점)

4. 적용내용 : 대상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및 이용자의 기본방역 수칙,
추가적용 수칙, 사적모임 수칙 등 준수 의무화

< 추가적용 수칙 : 아래 시설에 한 함 >

- 노래(코인)연습장 : 21시~익일 05시 운영중단
- PC방, 영화관, 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오락실 : 22시~익일 05시 운영중단

< 사적모임 수칙 >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참석자 수칙
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, 사적 모임인지 확인 ▶ 위 ①,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	▶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

※ 식당·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*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

- (전국)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('접종완료자 등' 과 동반 이용 불가)
- * PCR음성확인, 연령상 예외 등(18세 이하<2022.2.1.부터는 0~11세 이하>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)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

- 관리자·운영자는 식당·카페에서 2명 이상의 모임에 접종미완료자가 1명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,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

예시) 식당·카페 이용 예시 (※대형유통시설 등 시설 내 식당·카페 이용시 동일 적용)

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+ 접종완료자 등 0명 ⇒ 1명(0)

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+ 접종완료자 등 1명 ⇒ 2명(X)

< 사적모임 적용 예외 >

-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* 등이 모이는 경우
 - 동거가족 모임
 -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 - 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 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□ 노래(코인) 연습장 기본방역 수칙

- ※ ①노래(코인)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 중인 시설(음반·음악영상물제작업소, 예:뮤비방 등)은 방역수칙 동일 적용
 ②노래(코인)연습장 형태의 영업을 하는 무허가·무신고 업소 포함

〈위험요인〉

- ▲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어려움
- ▲ 이용자들 간에 친밀한 관계로 대화,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
- ▲ 음료 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
- ▲ 노래하며 춤을 추는 경우 거리두기가 어렵고,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
- ▲ 오랜 시간 일행 간 함께 체류하는 경우 접촉 시간이 길어짐
- ▲ 마이크, 노래코드북, 리모콘, 탬버린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
- ▲ 방 내부는 창문이 없는 등 좁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
- ▲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무적용	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	
	◦ 기본방역 수칙 게시·안내 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	◦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	
	◦ 모든 출입자로부터*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**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 - (미완료자, 예외자)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) PCR음성확인자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2) 예외자***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◦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	◦ 접종완료 및 음성/예외 등 확인 협조
* 관리자·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원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*** 18세 이하인 자(2022.2.1.부터는 0~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	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③ 출입자 명부 관리	
	◦ 모든 출입자*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** - 출입명부(수기)는 4주 보관 후 폐기	◦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**
	*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포함, 공무상 출입인 경우,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단, 개인 휴대전화에 없는 경우,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(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) ※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(이용) 제외 가능,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※ 계도기간(2021.12.6.~12.19.)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	
	④ 마스크 착용	
	◦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◦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	* 물·무알콜음료 섭취 시 예외	
	⑤ 음식섭취 금지	
	◦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	◦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
	⑥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
	◦ 방역관리자 지정 ◦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권고)	-
권고사항	◦ (환기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◦ (소독) 일 1회 이상 소독(공용물품, 손잡이, 난간 등) ◦ (손씻기)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◦ (시설 내 거리두기) 시설 내 2m(최소 1m) ◦ (공용시설)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	◦ 권고사항 준수
추가 적용	◦ 21시~익일 05시 운영중단	◦ 운영시간 제한 준수

□ PC방(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) 기본방역 수칙

<위험요인>

- ▲ 음식 섭취,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
- ▲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, 접촉 시간이 길어짐
- ▲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 시 함께 대화, 식사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
- ▲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·밀접 접촉 가능
- ▲ 키보드, 마우스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
- ▲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존재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무 적용	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	
	◦ 기본방역 수칙 게시·안내 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	◦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	
	◦ 모든 출입자로부터*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원치자 - (미완료자, 예외자)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) PCR음성확인자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2) 예외자***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◦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	◦ 접종완료 및 음성/예외 등 확인 협조
	* 관리자·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*** 18세 이하인 자(2022.2.1.부터는 0~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	
	③ 출입자 명부 관리	
	◦ 모든 출입자*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** - 출입명부(수기)는 4주 보관 후 폐기	◦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**
*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포함, 공무상 출입인 경우,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단, 개인 휴대전화 없는 경우,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(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) ※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(이용) 제외 가능,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※ 계도기간(2021.12.6.~12.19.)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	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④ 마스크 착용	
	◦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◦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	* 음식물 섭취 시 예외	
	⑤ 음식섭취 금지	
	◦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- 단,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	◦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- 단,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
	⑥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
권고사항	◦ 방역관리자 지정 ◦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권고)	-
	◦ (환기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	◦ 권고사항 준수
	◦ (소독) 일 1회 이상 소독(공용물품, 손잡이, 난간 등)	
	◦ (시설 내 거리두기) 시설 내 2m(최소 1m)	
	◦ (공용시설)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	
추가 적용	◦ 22시~익일 05시 운영중단	◦ 운영시간 제한 준수

□영화관 기본방역 수칙

<위험요인>

- ▲ 연극, 뮤지컬, 오페라 공연 등 노래와 말을 하는 공연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
- ▲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(클래식 공연 제외)
- ▲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
- ▲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·밀접 접촉 가능
- ▲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,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
- ▲ 공연 관람 전·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사례
- ▲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시설
- ▲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무적용	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	
	◦ 기본방역 수칙 게시·안내 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	◦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	
	◦ 모든 출입자로부터*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 - (미완료자, 예외자)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) PCR음성확인자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2) 예외자*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◦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	◦ 접종완료 및 음성/예외 등 확인 협조
	* 관리자·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같음 *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*** 18세 이하인 자(2022.2.1.부터는 0~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	
	③ 출입자 명부 관리	
	◦ 모든 출입자*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** - 출입명부(수기)는 4주 보관 후 폐기 ※ 예매자(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)에 한해 명부작성 제외 및 안내	◦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**
*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포함, 공무상 출입인 경우,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같음 ** 단, 개인 휴대전화에 없는 경우,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(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) ※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의 작성(이용) 제외 가능,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※ 계도기간(2021.12.6.~12.19.)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	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④ 마스크 착용	
	◦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◦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	* 음식물 섭취 시 예외	
	⑤ 음식섭취 금지	
	◦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- 단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(회차)을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	◦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- 단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(회차)을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
	☞ 2021.12.1. 0시부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도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	
	⑥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
권고사항	◦ 방역관리자 지정 ◦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권고)	-
	⑦ 추가적용 수칙	
	◦ 침방울이 튀는 행위(기립·함성·구호·합창) 금지 ◦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◦ 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◦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	◦ 침방울이 튀는 행위(기립·함성·구호·합창) 하지 않기 ◦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◦ 방역수칙 미준수 시 퇴장 조치에 협조
권고사항	◦ (환기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◦ (소독) 일 1회 이상 소독(공용물품, 손잡이, 난간 등) ◦ (시설 내 거리두기) 시설 내 2m(최소 1m) ◦ (공용시설) 휴면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	◦ 권고사항 준수
추가적용	◦ 22시~익일 05시 운영중단	◦ 운영시간 제한 준수

□멀티방·DVD방 기본방역 수칙

<위험요인>

- ▲ 음식 섭취,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
- ▲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 시 함께 대화, 식사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
- ▲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 밀집·밀접 접촉 가능
- ▲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,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
- ▲ 게임기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
- ▲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존재
- ▲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무적응	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	
	◦ 기본방역 수칙 게시·안내 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	◦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	
	◦ 모든 출입자로부터*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**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 - (미완료자, 예외자)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) PCR음성확인자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2) 예외자***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◦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	◦ 접종완료 및 음성/예외 등 확인 협조
	* 관리자·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*** 18세 이하인 자(2022.2.1.부터는 0~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	
	③ 출입자 명부 관리	
	◦ 모든 출입자*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** - 출입명부(수기)는 4주 보관 후 폐기	◦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**
	*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포함, 공무상 출입인 경우,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단,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,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(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) ※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(이용) 제외 가능,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※ 계도기간(2021.12.6.~12.19.)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④ 마스크 착용	
	◦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◦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	
	◦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섭취 금지 안내	◦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
	⑥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
	◦ 방역관리자 지정 ◦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권고)	-
권고 사항	◦ (환기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◦ (소독) 일 1회 이상 소독(공용물품, 손잡이, 난간 등) ◦ (시설 내 거리두기) 시설 내 2m(최소 1m) ◦ (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) 주사위, 카드, 게임기계,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,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◦ (공용시설)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	◦ 권고사항 준수
추가 적용	◦ 22시~익일 05시 운영중단(멀티방)	◦ 운영시간 제한 준수(멀티방)

□ 직업훈련기관 기본방역 수칙

〈위험요인〉

- ▲ 강의, 대화(어학학원 등)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
- ▲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
- ▲ (기숙 학원 등)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
- ▲ (관악기 학원) 악기 연주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
- ▲ 노래, 연기, 무용, 댄스학원에서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
- ▲ 악기, 연기, 무용, 댄스 학원 등은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동반될 가능성
- ▲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·밀접 접촉 가능

- ▲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,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
- ▲ 학원생의 주기적 방문은 잦은 재노출 기회로 이어짐
- ▲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,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
- ▲ 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원에서 노출을 통해 여러 학교로 전파 가능
- ▲ 규모가 큰 학원(대규모 입시학원, 고시학원 등)의 경우 지역·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무적용	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	
	◦ 기본방역 수칙 게시·안내 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	◦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	
	◦ 모든 출입자로부터*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**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 - (미완료자, 예외자)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) PCR음성확인자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2) 예외자***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◦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	◦ 접종완료 및 음성/예외 등 확인 협조
	* 관리자·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같음 *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*** 18세 이하인 자(2022.2.1.부터는 0~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	
	③ 출입자 명부 관리	
	◦ 모든 출입자*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** - 출입명부(수기)는 4주 보관 후 폐기	◦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**
	*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포함, 공무상 출입인 경우,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같음 ** 단, 개인 휴대전화 없는 경우,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(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) ※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(이용) 제외 가능,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※ 계도기간(2021.12.6.~12.19.)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	
	④ 마스크 착용	
	◦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◦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	* 음식물 섭취 시 예외	
	⑤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
	◦ 방역관리자 지정 ◦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권고)	-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⑥ 추가적용 수칙	
	-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 -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·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, '식당·카페' 방역수칙 준수 및 안내	전일제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, '식당·카페' 방역수칙 준수
	⑦ 기숙시설 운영	
	- 기숙시설 운영금지, 단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〈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〉 ① 입소자 (공동) 외출 자제, 매일 발열체크,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- (입소前) 10일간 예방격리 권고(접종완료자,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예외),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(접종완료자 예외) 결과 입소 시 제출 - (입소後)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: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,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·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, 층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샤워실·화장실 등) 소독 강화 -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(공동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매일 발열체크,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(접종완료자 예외) ③ 방문자 :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	
권고 사항	(환기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(소독) 일 1회 이상 소독(공용물품, 손잡이, 난간 등) (시설 내 거리두기) 시설 내 2m(최소 1m) (관악기·노래·연기) 마이크 덮개 사용, 연주·노래·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(춤출 때)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유지 (좌석) 한방향으로 좌석 배치 (공용시설)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	권고사항 준수
추가 적용	22시~익일 05시 운영중단	운영시간 제한 준수

□오락실 기본방역 수칙

〈위험요인〉

- ▶ 음식 섭취,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
- ▶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 시 함께 대화, 식사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
- ▶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 밀집·밀접 접촉 가능
- ▶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,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
- ▶ 게임기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
- ▶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존재
- ▶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무 적용	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	
	◦ 기본방역 수칙 게시·안내 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	◦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명부 관리	
	◦ 모든 출입자*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이용** 확인 및 안내 -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	◦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**
	*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포함, 공무원 출입인 경우,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,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*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	
	③ 마스크 착용	
	◦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◦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	④ 밀집도 완화 등	
	※ 접촉증명·음성확인제를 도입(접종완료자 등만 입장)하는 시설의 경우, 인원 제한 없음	
	◦ 시설 신고허가 면적 4㎡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	◦ 밀집도 제한 준수
	⑤ 음식섭취 금지	
	◦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	◦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
	⑥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
	◦ 방역관리자 지정 ◦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권고)	-
권고 사항	◦ (환기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◦ (소독) 일 1회 이상 소독(공용물품, 손잡이, 난간 등) ◦ (시설 내 거리두기) 시설 내 2m(최소 1m) ◦ (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) 주사위, 카드, 게임기계,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,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◦ (공용시설) 휴면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	◦ 권고사항 준수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추가 적용	◦ 22시~익일 05시 운영중단	◦ 운영시간 제한 준수
기타	※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	
	◦ 모든 출입자로부터*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*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 - (미완료자, 예외자)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) PCR음성확인자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2) 예외자*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◦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	◦ 접종완료 및 음성/예외 등 확인 협조
	* 관리자·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*** 18세 이하인 자(2022.2.1.부터는 0~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	

- 대형마트, 백화점, 복합쇼핑몰,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대형유통시설 (3,000㎡ 이상 대규모 점포) 기본방역 수칙

<위험요인>

- ▲ 물건 설명 등 대화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
- ▲ 이용자가 많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·밀접 접촉 가능
- ▲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,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
- ▲ 시설내 부대시설(음식점 등) 등 이용하는 경우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
- ▲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무 적용	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	
	◦ 기본방역 수칙 게시·안내 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	◦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명부 관리 ※ 대규모점포 및 3,000㎡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(예: 하나로마트)대상, 준대규모점포는 권고·전통시장 제외)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◦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** 확인 및 안내 -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	◦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***
	*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포함, 공무상 출입인 경우,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같음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,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*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	
	③ 마스크 착용	
	◦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◦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	* 음식물 섭취 시 예외	
	④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
	◦ 방역관리자 지정 ◦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권고)	-
	⑤ 추가적용 수칙	
	◦ 시식·시음·견본품(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) 서비스 금지 및 안내	◦ 시식·시음·견본품(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) 서비스 이용 금지
권고 사항	◦ (환기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등 ◦ (소독) 일 1회 이상 소독(공용물품, 손잡이, 난간 등) ◦ (밀집도 완화) -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안내 * 대기 줄을 서는 경우,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(최소1m)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- 대기인원 20명 이하 운영 안내, 방문예약제 등 적극 활용(권고) - 이용자 간 거리유지를 위해 충분한 통로 확보 - 밀집도 높은 구역은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부스 설치 등으로 인원분산 유도(권고) ◦ (집객행사) 대규모 세일 등 집객행사 자제 ◦ (공용시설)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	◦ 권고사항 준수

□ 콜센터 기본방역 수칙

<위험요인>

- ▲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무 환경일 경우 증상 발견이 늦어짐, 연쇄감염 발생
- ▲ 전화 응대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
- ▲ 근로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
- ▲ 근로자들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·밀접 접촉 가능
- ▲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,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
- ▲ 시설 내 공용 공간(휴게실 등), 공용 물품(전화기, 헤드셋, 마이크 등) 사용을 통한 직원 간 접촉 가능
- ▲ 직원 간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밀접 접촉 가능
- ▲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미흡
- ▲ 외부 방문객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전체 근로자'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(의무)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	■방역수칙 준수(의무)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증상확인 협조,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
	③ 방문자(근무자 외)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	■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(의무)	
	■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(의무) ■사업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확보 및 비치	■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(의무)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	⑤ 음식섭취 자제	
	■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제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제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손씻기	
	■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(의무)	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	
	■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(의무) ■ 근로자 간 2m(최소1m)간격 유지 ■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-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(운영대장 작성) *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*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	■ 근로자 간 2m(최소1m)간격 유지 ■ 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- 조별 식사시간 준수 *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
	⑧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* 지하, 청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■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(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)하고 자연환기 병행 *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	■ 회의, 작업 중 지정된 시간에 환기 후 근무
	⑨ 소독하기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* 공용책자, 공용물품(전화기, 헤드셋, 마이크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, 사무용기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■ 개인별 사무공간(책상 등)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■ 공용물품(전화기, 헤드셋, 마이크 등) 소독 후 사용하기
	⑩ 기타	
	■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(의무) ■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의무) ■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(의무) *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(병가, 연가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	■ 증상확인 협조 ■ 증상 있을 경우,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근 또는 출근자제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추가 수칙	① 근무형태	
	■ 유연근무제(제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, 휴가제도(가족돌봄휴가, 연차 휴가, 병가 등)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	■ 유연근무제(제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, 휴가제도(가족돌봄휴가, 연차 휴가, 병가 등)를 적극 활용
	■ 업무특성 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,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-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	■ 충분한 휴게시간 이용
	② 회의 및 워크숍, 교육, 연수, 출장, 행사	
	■ 출장 최소화, 회의 및 워크숍, 교육, 연수,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(영상)으로 실시 ■ 대면으로 회의, 워크숍, 교육, 연수 등 개최 시 개인위생수칙(마스크 착용, 손 위생, 거리유지 등) 준수 안내 ■ 사업장 내 모임, 회식 자제	■ 출장 최소화 하기, 회의, 워크숍, 교육, 연수,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(영상)으로 참여 ■ 대면으로 회의, 워크숍, 교육,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(마스크 착용, 손 위생, 거리유지 등) 준수 ■ 사업장 내 모임, 회식 자제
	③ 구내식당, 통근버스, 기숙사, 시설내 공용공간	
	■ 해당 방역수칙 준수 안내	■ 해당 방역수칙 준수

□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▲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▲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▲ 대화 금지 안내	▲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
화장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▲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▲ 사용 전/후 손씻기
탈의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▲ 손소독제 비치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▲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샤워실	▶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▶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▶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▶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	▶ 샤워실 내 대화 금지 ▶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▶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▶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
휴게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▶ 대화 자제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▶ 대화 자제
탕비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민원창구	▶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

5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2의2호, 제2의4호 및 제80조제7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6. 위반시 조치사항

-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
－ 시설 운영자 방역지침 위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지침 위반(10만원)

-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 폐쇄명령*
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(운영시간 제한 등)으로 확진자

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
*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운영중단,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함

*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년 12월 18일(토) 0시 부터

8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9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10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(대형유통시설 02-2133-5258)
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(직업훈련기관 02-2133-5463)
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(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02-2133-5384)
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(콜센터 02-2133-5248)
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(노래연습장 02-2133-9221,
PC방·오락실 02-2133-9213, 영화관·멀티방·DVD방 02-2133-9217)

계 급									